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7495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5. 3.

판결 선고2018. 5. 3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71,293원 및 그 중 220,417,988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3. 1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10128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3. 27. 접수 제131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0.부터 2021. 5.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는,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6. 1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18. 경남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21,130,518원을 대위변제한 뒤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712,5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20,417,988원(=221,130,518원 -

712,530원)이 되었고,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95원(=712,530원 × 약정 지연손해금율 10/100 × 1/365,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253,11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3. 22. 자신의 누나인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10128호로,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3. 27. 접수 제1319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이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35,834,500원,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128,000,000원, ③ 사천시 E 2066.09m² 1,123,952원 합계 164,958,452원에 불과하였고, 소극재산이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21,130,518원, ②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3,833,897원 합계 324,964,415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4,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장, 거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21,671,293원(= 대위변제금 220,417,988원 + 확정손해금 195원 + 채권보전비용 1,253,1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0,417,9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7. 3. 22.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6. 5. 20.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3개월여 후인 2017. 6. 19.경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8. 18.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4. 11. 13. 이 사건 제2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로 5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2. 28.에 29,085,760원, 2017. 3. 22.에 2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108,085,760원의 채권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통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예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피고 B와 피고 C는 친남매지간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는 후 약 90일만에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상현

판사 조용희

판사 구준모

별지